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및 부내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감사총괄담당관·반부패청렴담당관·사학감사담당관 및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을 “감사총괄담당관·반부패청렴담당관 및 사학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5. 시민감사관 협의체 운영관리
6. 사립대학·법인 감사에 대한 사후관리
7. 사학비리 신고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중 “고등교육정책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사학혁신지원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교육일자리총괄과·산학협력정책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및 전문대학정책과”를 “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역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수립·시행
5.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지방자치단체-기업(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8.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제6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일자리총괄과장”을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을 “기술대학·사내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회”를 “국가산학협력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학생 진로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활성화 지원
6.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및 협의체 구성·운영
7.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연수취업 지원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1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0. 대학 산학협력단 등 산학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1.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22. 산학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23. 산학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2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25.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활용 추진
26.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협회의체의 운영 지원
27.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 지원
28. 산학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협력 관련 통계 조사
29.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30.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1.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32.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제6조제1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5항제3호 중 “수립 및 제도개선”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19호) 중 “전문대”를 “전문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전문대학·법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9.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법인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13. 마이스터 대학 도입
14. 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제6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지원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
4.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5.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 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10. 전문기술인재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제7조제2항 중 “학교혁신정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교육협력과·교육과정정책과·교과서정책과·교수학습평가”를 “학교정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교육과정정책과·고교교육혁신과·교과서정책과·교수학습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혁신정책과장”

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17.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
18. 시·도교육청 직원 (학교회계직원은 제외한다)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20.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21호,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교원윤리강령”을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초·중등교원 초빙”을 “수석교사 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1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19.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관리
 20.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21.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22.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개선
 24.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5.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⑧ 고교교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교학점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수립
3.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체제 구축 운영
4.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예술·체육계열 제외)
7. 일반고 학생 대상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지원
8.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9.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0. 고교 교과교실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계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12.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13. 일반고 내 선택형 교육과정 이수·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14.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중전의 제8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기본계획”을 “기본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정도서의 편찬 계획의 수립·시행
16.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계 기관 협력·지원
18. 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9. 검정도서의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
20. 인정도서의 인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제7조제1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생평가 기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평가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생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학교생활기록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사의 수업-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 수립·시행·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18.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9.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20.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23. 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
24.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5. 학교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6. 문화소의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8.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 계획 수립
29.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제7조제11항제6호 중 “평화·통일·나라사랑”을 “평화·통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의2 및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4. 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제1호 중 “총괄·조정·평가”를 “기획·총괄·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축”을 “구축·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2호) 중 “교육전산망”을 “교육전산망협의회”로 한다.

6.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 운영

8.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조정

16.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별표 1 총계 “626”을 “634”로 하고, 특정직 계 “91”을 “92”로 하며, 교육연구관 “19”를 “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29”를 “5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78”을 “180”으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27”을 “131”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2”를 “43”으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631”을 “639”로 하고, 특정직 계 “91”을 “92”로 하며, 교육연구관 “19”를 “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4”를 “541”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78”을 “180”으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29”를 “13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5”를 “46”으로 한다.

별표 3 총계 “52”를 “53”으로 하고, 특정직 계 “32”를 “33”으로 하며, 교육연구사 “20”을 “21”로 한다.

별표 4 행정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5 총계 및 일반직 계 “25”를 각각 “2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0”을 “11”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략)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u>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및 내부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⑦ ~ ⑬ (생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관) ① (생략)	제4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반부패청렴담당관·사학감사담당관 및 교육신뢰회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 감사총괄담당관·반부패청렴담당관 및 사학감사담당관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⑥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시민감사관 협의체 운영관리</u>
<신설>	6. <u>사립대학·법인 감사에 대한 사후관리</u>
<신설>	7. <u>사학비리 신고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⑦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삭제>

1. <u>교육 분야 신뢰회복 관련 정책의 총괄·기획</u>	
2. <u>교육 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3. <u>교육 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4. <u>교육 분야 신뢰회복과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u>	
5. <u>교육비리 예방 및 감사에 관한 사항</u>	
6. <u>교육 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 협의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7. <u>교육 분야 신뢰회복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u>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생략)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교육정책실에 <u>고등교육정책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사학혁신지원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교육일자리총괄과·산학협력정책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및 전문대학정책과</u> 를 둔다.	② ----- <u>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지역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u>

	을 분장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수립·시행 5.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지방자치단체-기업(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8.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⑤·⑥ (생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 ⑪ (생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 교육일자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대학생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 4.·5. (생략) 6. 대학별 진로취업부서 운영 지원 및 진로교육협의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 7. 단계별·학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지원 8. ~ 11. (생략) 12.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3. 대학생 해외 인턴십 및 해외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14.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사업 지원 15. ~ 17. (생략) 18.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신설>	⑫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 -----. 1. ~ 2. (현행과 같음) 3. 대학생 진로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활성화 지원 4.·5. (현행과 같음) 6.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및 협의체 구성·운영 7.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연수취업 지원 8. ~ 11. (현행과 같음)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1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15. ~ 17. (현행과 같음) 18. 기술대학·사내대학----- ----- 19.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20. 대학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

<신 설>	영·개선 21.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22.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신 설>	23. 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신 설>	2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4. 산학연 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신 설>	25.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및 산업 기술인력 양성·활용 추진		5.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신 설>	26.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 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6.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신 설>	27.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 연구소 지원		7.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운영 지원	
<신 설>	28. 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 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8. 산학연 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신 설>	29.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9.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0.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신 설>	31.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11.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시행	
<신 설>	32. 공학교육 혁신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삭 제>	12.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⑬ 산학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 연구소 지원	
			14. 산학협동재단의 운영 지원	

15. 산학협력력 백서 발간 및 산학 협력력 관련 통계 조사		8. 전문대학의 설치·폐지·위치 변경·명칭변경·분교설치·통 폐합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정 책의 수립·시행		<신 설>	9.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 ·통폐합에 관한 사항
17.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 원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18.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 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전문대학·법인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 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20.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11.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 과정의 개선 지원	<삭 제>
21.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 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 된 대학 지원		12.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 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여학생의 이공 분야 교육 및 진출 지원		13.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 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3. 마이스터 대학 도입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14.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에 관한 사항	14. 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⑮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⑮ ----- -----.	15.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6.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 리	<삭 제>
3. 전문대학·법인의 재무·회계 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 ----- ----- 수립· 시행	17.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 관리	<삭 제>
<신 설>	4. 전문대학·법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18.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삭 제>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 지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u>육성 지원</u> 19. <u>공영형 전문대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u> 20. <u>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u> 21. (생 략) <신 설>	15. ---- <u>전문대학</u> ----- ----- <삭 제> 16. (현행 제21호와 같음) ⑩ <u>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지원</u> 2. <u>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3. <u>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u> 4. <u>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u> 5. <u>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 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6. <u>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u> 7. <u>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u> 8. <u>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u>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생 략) ② <u>학교혁신지원실에 학교혁신정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교육협력과·교육과정정책과·교과서정책과·교수학습평가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u> ③ (생 략) ④ <u>학교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9. <u>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u> 10. <u>전문기술인재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u> 11. <u>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u>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학교정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교육과정정책과·고교교육혁신과·교과서정책과·교수학습평가-----.</u> ③ (현행과 같음) ④ <u>학교정책과장-----.</u> 1. ~ 14. (현행과 같음) 15. <u>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u> 16.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u> 17. <u>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u> 18. <u>시·도교육청 직원 (학교회계</u>
--	---	--	--	---

<신 설> <신 설> 22. · 23. (생 략) 24. (생 략) ⑤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u>교원윤리강령에 관한 사항</u> 5. (생 략) 6. <u>초·중등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u> 7. (생 략) 8. <u>교원 수급계획</u> 9. · 10. (생 략) 11. <u>교권향상·교원예우 및 초·중등학교 여성 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u> 12. · 13. (생 략) <신 설> <신 설>	<u>직원은 제외한다)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u> 19. <u>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u> 20. <u>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21. · 22. (현행 제22호 및 제23호와 같음) 23. (현행 제24호와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u> 5. (현행과 같음) 6. <u>수석교사 제도 운영-----</u> 7. (현행과 같음) 8. <u>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u> 9. · 10. (현행과 같음) 11. <u>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u> 12. · 13. (현행과 같음) 14. <u>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u> 15. <u>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생 략) ⑦ <u>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u>	16. <u>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17. <u>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u> 18. <u>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u> 19. <u>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관리</u> 20. <u>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u> 21. <u>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u> 22. <u>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u> 23. <u>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개선</u> 24. <u>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25. <u>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u>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	---	---	---

-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4.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 관리
5.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6.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8.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
9. 시·도교육청 직원(학교회계직원은 제외한다)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14.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신 설>

⑧ 고교교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교학점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수립
3.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체제 구축 운영
4.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예술·체육계열 제외)
7. 일반고 학생 대상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지원
8.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u>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u> 9. <u>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u> 10. <u>고교 교과교실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1. <u>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계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u> 12. <u>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u> 13. <u>일반고 내 선택형 교육과정 이수·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u> 14. <u>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u>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 5. (생략) 6. <u>국정도서의 편찬, 검정도서의 검정 및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7. ~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2. ~ 5. (현행과 같음) 6. <u>국정도서의 편찬 계획의 수립·시행</u> 7. ~ 15. (현행과 같음) 16. <u>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17. <u>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계기관 협력·지원</u> 18. <u>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19. <u>검정도서의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u> 20. <u>인정도서의 인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u>
⑧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u>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u> 18. <u>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19. <u>교과교실제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총괄</u> ⑨ 교과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⑦ ----- -----. 1. ~ 1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⑨ ----- -----. 1. ----- 기본 정책-----		⑩ 교수학습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학교성적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 2. <u>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에 관한 사항</u> 3. <u>중앙교수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활동 지원</u> 4. <u>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u>	⑪ ----- -----. 1. <u>학생평가 기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 <u>학생평가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u> 3. <u>학생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4. <u>학교생활기록의 국가표준화를</u>

<u>연구 발표회의 운영 지원</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신 설> 8. ~ 10. (생 략) 11. (생 략) <u>1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u>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u> 5. <u>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6. <u>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7. <u>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8. <u>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5호와 같음) 11. (현행 제6호와 같음) 12. (현행 제7호와 같음) 10. <u>교사의 수업-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 수립·시행·지원에 관한 사항</u> 13. ~ 15.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6. (현행 제11호와 같음) <삭 제> 17. <u>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u> 18. <u>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⑪ <u>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5. (생 략)	<u>영에 관한 사항</u> 19. <u>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u> 20. <u>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21. <u>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22. <u>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u> 23. <u>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u> 24. <u>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u> 25. <u>학교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6. <u>문화소의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27. <u>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28. <u>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 계획 수립</u> 29. <u>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u> ⑪ ----- -----. 1. ~ 5. (현행과 같음)
---	---	--	--

6. 초·중등학교 <u>평화·통일·나라사랑</u> 교육에 관한 사항	6. ----- <u>평화·통일</u> -----
7. <u>삭 제</u>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14. 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의2.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	<삭 제>
15.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스포츠강사 지원	<삭 제>
16.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삭 제>
17.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삭 제>
18.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삭 제>
19. 학교 예술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예술 수업 내실화 지원	<삭 제>
20. 예술고등학교·예술중점학교·예술교육선도학교·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21.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영재교육 지원	<삭 제>
제10조(교육안전정보국) ① ~ ⑤ (생 략)	제10조(교육안전정보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교육 정보 및 정보화 정책 <u>총괄·조정·평가</u>	1. ----- <u>기획·총괄·조정</u>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4. ----- <u>구축·운영</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u>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신 설>	7. <u>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 운영</u>
<신 설>	8. <u>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조정</u>
6. ~ 9. (생 략)	9. ~ 12.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생 략)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대학 <u>교육전산망</u> 운영 지원	15. -- <u>교육전산망협의회</u> ---
13.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화 예산의 검토·조정	<삭 제>
<신 설>	16.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 16. (생 략)	17. ~ 19. (현행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17. ~ 26. (생 략)	20. ~ 29. (현행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26	634	+8
·	·	·	
·	·	·	
특정직 계	91	92	+1
·	·	·	
·	·	·	
교육연구관	19	20	+1
·	·	·	
일반직 계	529	536	+7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 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 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78	180	+2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 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 ·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 ·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27	131	+4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2	43	+1
·	·	·	
·	·	·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1</u>	<u>639</u>	+8
·	·	·	
·	·	·	
특정직 계	<u>91</u>	<u>92</u>	+1
·	·	·	
·	·	·	
교육연구관	<u>19</u>	<u>20</u>	+1
·	·	·	
일반직 계	<u>534</u>	<u>541</u>	+7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u>178</u>	<u>180</u>	+2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 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식품 위생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 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u>129</u>	<u>133</u>	+4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45</u>	<u>46</u>	+1
·	·	·	
·	·	·	

[별표 3]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u>	<u>53</u>	+1
특정직 계	<u>32</u>	<u>33</u>	+1
·	·	·	
·	·	·	
교육연구사	<u>20</u>	<u>21</u>	+1
·	·	·	
·	·	·	

[별표 4]

중앙교육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방송통신서기</u>	<u>1</u>	<u><삭 제></u>	-1
<u>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u>	<u>26</u>	+1
일반직 계	<u>25</u>	<u>26</u>	+1
·	·	·	
·	·	·	
행정사무관	<u>10</u>	<u>11</u>	+1
·	·	·	
·	·	·	

[별표 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2조 관련)

1. 교육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3명 (4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차관보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